



정치의 불을 바꾸면
다름이 달라집니다.

국민행복



법무부

보도자료

반듯한 사회, 행복한 국민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		총 2쪽
배포일시	2016. 9. 20.(화)	담당부서	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	
담당과장	이 동 권 02) 2110-4075	담당자	사무관 윤상용 02) 2110-4082	
사진	없음	대변인실	02) 2110-3717	

‘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’ 3개월 연장 시행

-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‘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’(이하 자진출국 제도라 함)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시행합니다.
-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(14만 명)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.
-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‘15년 말 21.4만 명에서 ‘16년 8월말 기준 21.1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.
- 법무부는 이와 같이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가 있어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.

※ 불법체류자 및 자진출국자 등 추이

구 분	2014년	2015년	2016년 8월 말
불법체류자 (연말 기준)	20.8만 명	21.4만 명	21.1만 명
자진출국자	2.5만 명	2.8만 명	2.8만 명 (‘16년1월~8월)
단속외국인	1.8만 명	1.9만 명	1.9만 명 (‘16년1월~8월)

■ 현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 시, 기존에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하였던 불이익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입니다.

-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·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,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.

■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출국 준비가 되지 않은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올해 12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.